

기 관 명

수 신 발 신 직인

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결정·경정 내용 통보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(예정·수정 신고 포함)·결정·경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[illegible]

작성 방법

- ☐ ① 관리번호: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인적사항(납세의무자)란
- ③ 주민등록번호: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④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⑤ 현주소(신고 당시 주소):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☐ ⑥ 신고 구분: 확정신고, 수정신고, 기한후신고, 결정, 경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☐ ⑦ 귀속연도: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.
- ☐ ⑧ 정산근속연수: 정산근속연수(⑨+⑩ 합계)를 기재합니다.
- ☐ ⑨ 12.12.31이전 근속연수 ⑩ 13.1.1이후 근속연수: 근속연수를 12.12.31이전과 13.1.1이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☐ ⑪ 세무서(담당자):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.
- ☐ ⑫ 당초 납부기한: ⑬ 최종납부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납부기한을 기재하고, ⑭ 최종납부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납부기한 직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.
- ☐ ⑬ 최종 납부기한: 납세자에게 고지하여 확정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.
- ☐ ⑭ 송달불능 사유, ⑮ 공시송달일: 송달불능 사유 및 공시송달일을 기재합니다.
- ☐ ⑯ 구분: "당초"는 최초로 통보되는 자료 또는 수정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, "수정"은 수정신고·기한후신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변경된 경우를 기재합니다.
- ☐ ⑰ 신고, 결정·경정일: 해당되는 소득의 신고, 결정, 경정 날짜를 기재합니다.
- ⑱ 발행연월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.
- ⑲ 발행번호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 내역란
- ⑳ 과세표준 ~ ㉔ 산출세액: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~ 산출세액을 '2012.12.31 이전', '2013.1.1 이후', '계'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㉕ 가산세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의2 "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" 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,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.
- ㉖ 총결정세액: "㉔ 산출세액 - ㉗ 세액공제 + ㉕ 가산세 + ㉙ 이연퇴직소득세 납부"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㉚ 본세: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.
- ☐ 환급금 신고계좌란
- ㉛ 은행코드: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.
- ㉜ 계좌번호: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